고용노동부 | 보도참고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20.(금) 배포 즉시

# 서울 서대문구 일대 중·소 건설현장 일제 패트롤 점검, 한파·추락 등 기본 안전조치 집중 확인

- 노동부 장관, 점검했던 현장도 불시에 다시 확인…
**법 위반은 엄정 조치,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확인 지시**

**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**은 11월 20일(금) **매주 「작은현장, 안전의날」**로 운영하고 있는 **서울서부지청의 현장점검에 참여**해,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와 함께 **서울 서대문구 일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제 패트롤 점검**을 실시했다.

이번 점검은 **겨울철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한파 대비 노동자 보호조치와 추락 등 주요 사고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**하고, 최근의 **산업재해 감소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**하기 위해 추진됐다.

**김영훈 장관은** ○○ 종교시설 신축공사 **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, 「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*」 이행 여부와 작업발판·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, 데크플레이트 등 가설구조물의 붕괴예방조치 및 화재 시 대피경로 확보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**했다.

* ❶ 따뜻한 옷 ❷ 따뜻한 쉼터(휴식) ❸ 따뜻한 물 ❹ 작업시간대 조정 ❺ 119 신고

점검 결과, **작업구역 내 의자만 둔 형태로 휴게시설을 운영**하고 있어 한파 시 **충분한 휴식이 어려운 점을 확인**하고, **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따뜻한 쉼터를** 갖추도록 지시했다.

또한, **계단·슬래브 등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, 거푸집 해체구간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,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미준수, 강관·이동식비계의 난간 및 작업발판 설치기준 미준수, 비상구 안내표지 미설치 등** 화재 대피경로 관리 미흡 사항을 확인해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.

한편, 같은 날 **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감독과 패트롤팀**은 지난 10월 점검했던 서대문구 소재 **○○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** 건설현장을 **불시에 다시 찾아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했다.**

그 결과, **단부 추락방지조치 등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**해 **즉시 재감독을 실시하고,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사법처리**했다.

**이번 재감독은** 김영훈 장관이 **최근 기관장회의에서 "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고,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도 불시에 재점검**해 주기 바란다"라고 **강조한 방침**에 따른 것이다.

불시 점검을 마친 뒤 김영훈 장관은 "**건설현장은 작은 안전조치 하나를 소홀히 해도 추락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**"라며, "**특히 산재 예방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·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패트롤과 불시 점검을 강화하겠다**"라고 말했다.

아울러 "**지금까지의 산업재해 감소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패트롤, 불시점검, 재감독 등 현장 예방활동을 적극적**으로 이어가겠다"라며, "**위험한 현장은 다시 찾고, 필요한 안전조치가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확인하겠다**"라고 밝혔다.

한편, 고용노동부는 **2026년 11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 「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」을 추진**한다. 건설업 등 **한파 취약사업장 3만여 개소를 집중 관리**하고, **한파특보 시 작업시간대 조정, 따뜻한 쉼터·물 제공 등 「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」이 지켜지도록 지도·점검을 강화**할 계획이다.

아울러 **현재 권고사항 중심으로 운영되는 「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」을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로 의무화하기 위해 「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개정도 추진** 중이다.

특히 **12월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약 4천 개소를 점검하고, 건설현장 200개소는 새벽 작업시간 조정과 함께 질식·화재·폭발·떨어짐·무너짐 등 겨울철 주요 위험요인도 병행 확인**할 계획이다.

붙임 1.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1부.
2. 한랭질환 예방 사전점검표 1부.

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산업안전보건본부<br>안전보건감독기획과<br>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단 | 책임자 | 과 장 | 박상원 | (044-202-8901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이근배 | (044-202-8882) |
| | | | 주무관 | 박현덕 | (044-202-8945) |
| 담당부서 | 산업보건보상정책관<br>직업건강증진팀 | 책임자 | 과 장 | 유종호 | (044-202-889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박현건 | (044-202-8891) |
| 담당부서 | 안전보건감독국<br>건설산재예방감독과 | 책임자 | 과 장 | 황효정 | (044-202-8935) |
| | | 담당자 | 서기관 | 이상혁 | (044-202-8963) |
| 담당부서 |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<br>산재예방감독과 | 책임자 | 과 장 | 김숙자 | (02-2077-6175) |
| | | 담당자 | 노동감독관 | 강신환 | (02-2077-6173) |








**붙임 1** 겨울철 한파로 인한 「한랭질환 예방수칙」

#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



6개 외국어 번역본

- 한파란 근로자에게 저체온증·동상·동창 및 그 밖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차가운 온도의 기상현상을 말합니다.
- 한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체온증, 동상, 동창 등의 한랭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.

"한파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일하는 경우 **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**을 준수해야 합니다."

## 한파특보 발표기준

| | |
|---|---|
| 한파주의보 | ✷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℃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<br>✷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℃ 이상 하강하여 3℃ 이하 예상될 때 등 |
| 한파경보 | ✷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℃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<br>✷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℃ 이상 하강하여 3℃ 이하 예상될 때 등 |

※ 세부사항은 기상청 시행령 [별표1] 특보기준 참고

##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

| | |
|---|---|
| 따뜻한 옷 | ✷ 보온 기능이 있는 의류, 장갑, 신발 착용 및 지도<br>✷ 머리와 귀를 덮는 모자 등을 착용 및 지도<br>*물이나 땀에 젖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여분의 양말 준비 |
| 따뜻한 쉼터(휴식) | ✷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따뜻한 쉼터 설치<br>*쉼터에서의 화재 및 유해가스 중독 등 예방조치 실시<br>✷ 한파특보 발령 시 적절한 휴식 부여 |
| 따뜻한 물 | ✷ 깨끗하고 따뜻한 물 제공 |
| 작업시간대 조정 | ✷ 한파 특보 발령 시 추운 시간대(오전 3시~9시)를 피해 작업시간대 조정<br>한파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작업시간 단축<br>한파경보 추운시간대(새벽) 옥외 작업중지 또는 최소화 |
| 119 신고 | ✷ 한랭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9신고<br>✷ 한랭질환 증상 및 예방조치, 응급조치 요령을 미리 알릴 것 |

OPEN 사업장

고용노동부 | 안전보건공단 | 질병관리청

2026-산업보건실-810

## 한랭질환 민감군 관리

* 한랭질환 민감군 모니터링 및 주기적으로 따뜻한 쉼터에서 휴식 부여
* 한파특보 시 한랭질환 **민감군** 및 **중작업** 수행 노동자 → 추운 시간대(새벽) 옥외작업 최소화

**민감군** 고혈압, 당뇨, 뇌심혈관질환, 갑상선 기능저하, 하약체질, 고령자, 신규 배치자 등이 해당

**중작업** 열량소비가 많은 삽·망치·톱·곡괭이·도끼 등을 이용한 형틀·철근·타설 작업 등 전신을 움직이는 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작업 등

## 한랭질환별 증상 및 응급조치

| 한랭질환 | 증상 | 응급조치 요령 |
|---|---|---|
|  저체온증 | * 심부체온이 35℃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<br>* 몸 떨림, 피로감, 착란, 어눌한 말투, 기억상실, 졸림<br>* (경증) 인지장애<br>* (중증도) 의식소실, 부정맥, 호흡저하<br>* (중증) 혼수, 심장정지 | * 체온 35℃ 미만 / 의식이 없는 경우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<br>* 119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또는 의료기관으로 갈 수 없는 경우, 다음과 같이 조치하기<br>- 가능한 빨리 환자를 따뜻한 장소로 이동시키기<br>-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 등으로 감싸기 |
|  동상 | * 저온에 노출되어 피부·피하조직이 동결·손상된 상태<br>* 피부색이 흰색이나 누런 회색으로 변함<br>* 피부 촉감이 비정상적으로 단단해짐<br>* 피부감각이 저하되어 무감각해짐 | *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기<br>* 즉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기<br>- 신속히 따뜻한 장소로 이동시키기<br>- 동상 부위를 따뜻한 물에 20~40분간 담그기 |
|  동창 | * 피부가 붉게 변하고 가려움<br>* 심한 경우 물혈·물집·궤양 등 발생 | * 언 부위를 따뜻한 물에 담가 따뜻하게 하기<br>* 동창 부위를 살살 마사지하여 혈액순환을 유도하고 긁지 않기<br>* 동창 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보습하기 |
|  침족병 / 참수병 | * 가렵거나 무감각하고 저린듯한 통증<br>* 피부가 부어오르며 빨갛게 되거나 파란색 혹은 검은색을 띰<br>* 심할 경우 물집·괴사·궤양 발생 | * 젖은 신발과 양말은 벗어 제거하기<br>* 손상 부위를 따뜻한 물에 조심스럽게 씻은 후 건조시키기 |

※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 "한파대비와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" 참고

## 겨울철 질식·미끄러짐 사고 예방

### 건설현장 갈탄 사용 시 질식위험 예방



* 양생 시 갈탄보다는 열풍기를 사용하세요.
*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을 사용할 경우
  -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, 충분한 환기, 보호구 착용

### 빙판길 미끄러짐 예방



* 미끄럼 방지용 안전화를 착용합니다.
* 작업시작 전 빙판이나 눈이 쌓인 곳은 제설작업을 실시하고, 모래 등을 뿌려줍니다.

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질병관리청

**붙임 2** **한랭질환 예방 및 휴게시설 사전점검표**

# 한랭질환 예방 사전점검표



## 따뜻한 옷

| | |
|---|---|
| ▶ 보온 기능이 있는 의류, 장갑, 신발 착용 및 지도 | ☐ 적정<br>☐ 개선 필요 |
| ▶ 머리와 귀를 덮는 모자 등을 착용 및 지도<br>*물이나 땀에 젖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여분의 양말 준비 | |

## 따뜻한 쉼터

| | |
|---|---|
| ▶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따뜻한 쉼터 설치<br>*쉼터에서의 화재 및 유해가스 중독 등 예방조치 실시 | ☐ 적정<br>☐ 개선 필요 |
| ▶ 한파특보 발령 시 적절한 휴식 부여 | |
| ▶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관리 기준 준수<br>* (설치·관리 기준 준수) 크기, 온도, 위치 등 적정기준 준수 여부 확인 | |

## 따뜻한 물

| | |
|---|---|
| ▶ 깨끗하고 따뜻한 물 제공 | ☐ 적정<br>☐ 개선 필요 |

## 작업시간대 조정

| | |
|---|---|
| ▶ 한파 특보 발령 시 추운 시간대(오전 3시-9시)를 피해 작업시간대 조정 | ☐ 적정<br>☐ 개선 필요 |
| ▶ 한파특보(주의보) 발령 시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작업시간 단축 | |
| ▶ 한파특보(경보) 발령 시 추운시간대(새벽) 옥외 작업중지 또는 최소화 | |

## 응급조치 (119신고)

| | |
|---|---|
| ▶ 한랭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9신고<br>* 한랭질환 증상 및 예방조치, 응급조치 요령을 미리 알릴 것 | ☐ 적정<br>☐ 개선 필요 |

## 한랭질환 민감군 관리

| | |
|---|---|
| ▶ 한파특보 시 한랭질환 민감군 및 중작업 수행 노동자 중점 관리<br>- (민감군) 고혈압, 당뇨, 뇌심혈관질환, 감성선 기능저하, 고령자, 신규배치자 등<br>- (중작업) 형틀·철근·타설작업 등 건설현장에서 전신을 움직이는 작업, 중량물을 수작업에 의해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작업 | ☐ 적정<br>☐ 개선 필요 |

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

2026-산업보건실-811

# 휴게시설 설치·관리기준 점검표



##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

| | |
|---|---|
|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여부 | ☐설치 ☐미설치 |

## 크기 최소 바닥면적과 천장까지의 높이

| | |
|---|---|
| 최소 바닥면적 6㎡ 이상, 바닥면에서 천장까지 높이 2.1m 이상 | ☐적정 ☐개선 필요 |
|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하였는지 여부 | ☐적정 ☐개선 필요 |

## 위치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곳에 설치

| | |
|---|---|
| 휴식시간에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곳에 설치<br>* 작업장소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게시간의 20% 넘지 않는 곳에 위치 | ☐적정 ☐개선 필요 |
| 화재폭발, 유해물질, 분진 및 소음 노출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 | ☐적정 ☐개선 필요 |

## 온도·습도·조명·환기 적정 기준 준수

| | |
|---|---|
| 적정 온도(18~28도)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 설치 | ☐적정 ☐개선 필요 |
| 적정 습도(50~55%)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 설치 | ☐적정 ☐개선 필요 |
| 적정 조도(100~200럭스)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 설치 | ☐적정 ☐개선 필요 |
| 창문 등을 통해 환기를 시킬 수 있는지 여부 | ☐적정 ☐개선 필요 |

## 비품 구비 및 관리

| | |
|---|---|
|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구비 | ☐적정 ☐개선 필요 |
|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 구비 | ☐적정 ☐개선 필요 |
| 휴게시설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외부에 부착 | ☐적정 ☐개선 필요 |
| 관리 담당자 지정 | ☐적정 ☐개선 필요 |

## 목적 외 사용금지

| | |
|---|---|
|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| ☐적정 ☐개선 필요 |

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